



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

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

01

신속 통지

▶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

| 시 한 |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(5일 이내)

- | 통지항목 |
-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 - 2 유출 시점 및 그 경위
 -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
 - 4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
 - 5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

02

긴급 조치

▶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

| 접속경로 차단, 취약점 점검·보완,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

|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

03

대량 유출

▶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

|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, www.privacy.go.kr)에 신고

|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



행정자치부



KISA 한국인터넷진흥원